

의안번호	제 348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279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4월 일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	-----

발의연월일 : 2009년 4월 일

발 의 자 : 권광택 · 민경환 · 이영복  
심홍섭 · 박영웅 · 이범윤  
박종갑( 7인)

## 1. 제안 이유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수질, 잔류농약  
과 농산식품 분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  
기 위하여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분석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하  
고, 운영상 제기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문구의 수정과 행정주체 등을 규  
정(안 제1조 ~ 안 제3조, 안 제5조 ~ 안 제6조)
- 나.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 규정 마련(안 제8조)
- 다. 시험실시 전 시험 의뢰 철회로 시험 미 실시시 경비 반환 규정 마  
련(안 제11조)

## 3. 참고 사항

- 가. 의안전문 : 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다.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라.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과 협의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변화 및”을 “변화와”로, 제2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성분 및”을 “성분과”로 각각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험등”을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으로, “신청서”를 “의뢰신청서”로 각각 한다.

제5조 중 “의뢰신청을”을 “의뢰신청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술원”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를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분석 업무 처리절차 (제5조 관련)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한
		농업기술원	
시험	신청서작성	접수 : 민원담당부서	- 여름작물:11월1일~12월15일 - 겨울작물:6월1일~7월15일 - 작물 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 상기시기와 2월 1일 ~ 2월 말일 8월 1일 ~ 8월 31일
		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계획 심의 : 심의회	
	시험경비납부	시험실시통지 : 민원담당부서	통지: 시험실시 결정 후 즉시 시험경비납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 해당부서	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결과 평가 : 심의회	
성적서교부	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분석	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	작물오염 23일, 수질오염 14일, 토양오염 21일, 토양화학적 분석 9일, 토양물리적 분석 14일, 토양조사 21일, 농작물 농약잔류량 23일, 농경지토양 농약잔류량 23일, 농업용수 농약잔류량 23일, 농산식품 화학성분 14일, 농산식품 물리성분 10일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 완료 후 5일 이내



현행	개정안
<p>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 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 절차) .....                  ..... <u>의뢰신청서를</u> .....                  .....                  .....</p>
<p>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 기술원장은 <u>기술원이</u>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③(생략)</p>	<p>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 ..... <u>충청북도농업기술원</u> .....                  .....                  .....                  .....                  .....                  ②-③(현행과 같음)</p>
<p>제8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u>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결과통지) .....                  .....                  .....                  .....                  .....                  ..... <u>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u> .....</p>
<p>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②(생략)                  ③ &lt;신설&gt;</p>	<p>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기술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밤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 시험업무처리절차(생략) * 분석업무처리절차(별표 1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분석 업무 처리절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분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 : 민원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석실시 : 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석 실제 소요시간</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적서 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과통지 : 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석 완료 후 즉시</td> </tr> </table>	분석	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 실제 소요시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 완료 후 즉시	<p>* 시험업무처리절차(현행과 같음) * 분석업무처리절차(별표 1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분석 업무 처리절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분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 : 민원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석실시 : 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작문오염 23일, 수질오염 14일, 토양오염 21일, 토양화학적 분석 9일, 토양물리적 분석 14일, 토양조사 21일, 농작물 농약잔류량 23일, 농경지토양 농약잔류량 23일, 농업용수 농약잔류량 23일, 농산식품 화학성분 14일, 농산식품 물리성분 10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적서 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과통지 : 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석 완료 후 5일 이내</td> </tr> </table>	분석	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	작문오염 23일, 수질오염 14일, 토양오염 21일, 토양화학적 분석 9일, 토양물리적 분석 14일, 토양조사 21일, 농작물 농약잔류량 23일, 농경지토양 농약잔류량 23일, 농업용수 농약잔류량 23일, 농산식품 화학성분 14일, 농산식품 물리성분 10일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 완료 후 5일 이내
분석		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 실제 소요시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 완료 후 즉시																								
분석	신청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	작문오염 23일, 수질오염 14일, 토양오염 21일, 토양화학적 분석 9일, 토양물리적 분석 14일, 토양조사 21일, 농작물 농약잔류량 23일, 농경지토양 농약잔류량 23일, 농업용수 농약잔류량 23일, 농산식품 화학성분 14일, 농산식품 물리성분 10일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 완료 후 5일 이내																								

## 관련법령

### □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험등의 의뢰) ①시험·분석 및 농업용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연구소등의 장(이하 "연구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연구소등에 시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등)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 퇴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기간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험 및 검사기간)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별표의 실험 및 검사기간(다만, 시험설계에 의거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시험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작물의 경종시험 등 생육시기와 관련되는 시험 및 검사의 경우 시험 및 검사시작 가능시까지의 기간

##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실험 또는 검사구분	실험 또는 검사 기간	처리기관
	<위탁분석>			
1390000-0005	<u>농작물오염분석</u>	1.작물오염 2.수질오염 3.토양오염	<u>23</u> <u>14</u> <u>21</u>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0006	<u>토양물리화학분석</u>	1.화학적분석 2.물리적분석 3.토양조사	<u>9</u> <u>14</u> <u>21</u>	"
1390000-0007	병해충검정	분류동정	10	"
1390000-0008	<u>농작물,농경지토양,농업 용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분석</u>	1.농작물 잔류량 2.농경지 토양 잔류량 3.농업용수 잔류량	<u>23</u> <u>23</u> <u>23</u>	"
1390000-0009	누에고치기계검정	누에고치기계 검정시험	15일	"
1390000-0010	사료성분분석	1.일반조성분 분석 2.무기물 분석 3.비타민 분석 4.아미노산 분석	7 7 7 7	축산 과학원
1390000-0011	축산물(유·육·난제품) 성분분석	일반성분 분석	7	"
1390000-0014	<u>농산식품분석</u>	1.화학성분검사 2.물리성분검사	<u>14</u> <u>10</u>	국립농업과학원